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34
----------	-------

발의연월일 : 2023. 10. 19.

발 의 자 : 김영주 · 윤관석 · 전해철
박주민 · 김상희 · 김승남
윤미향 · 남인순 · 김영진
신영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되어 의료인 인증,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등 무자격자의 인증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1 및 제92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11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① 제58조의11제9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1제9항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⑧ (생략)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⑨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제92조(과태료) <u><신 설></u>	제92조(과태료) ① 제58조의11제9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③ (생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 ----- ----- ----- -----.